

문서번호	BSKS-2-1-01
제정일자	1985.11.01.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1/9

1985.11.01.제정 1992.03.01.개정 1995.03.01.개정 2000.03.02.개정 2001.03.02.개정 2004.03.02.개정 2009.03.02.개정 2009.06.29.개정 2011.10.01.개정 2014.02.01.개정 2020.07.03.개정 2020.09.25.개정 2022.04.15.개정

소관부서 : 산학처

제 1 장 총 칙

- 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학생간부(정·부 총학생회장) 선출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선거권) 본 대학 재학생으로 당해 학기 등록을 필한 자로,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학생에 게 부여한다.
- 제3조(피선거권) ① 피선거권자는 주·야간 구분없이 2인1조로 팀(런닝 메이트)을 구성하여야 한다.(단, 동일 학과에서는 2인1조로 팀을 구성할 수 없으며, 전공심화 과정은 피선고권 없음)
 - ② 2인1조로 팀을 구성한 피선거권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.
 - 1. 품행이 방정하고 지휘 통솔 능력이 있는 자
 - 2. 당해 학기 등록을 필한 자
 - 3. 전학기 성적이 B급(3.00)이상인 자
 - 4. 학칙을 위반하여 근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
 - 5. 범죄 및 수사경력 조회 확인 시 해당사항이 없는 자
- 제4조 이 규정이 정하는 선거 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.) 에서 관리한다.
- 제5조(선거방법) 선거는 보통, 평등, 비밀, 직접 선거로 한다.

제6조 삭제



문서번호	BSKS-2-1-01
제정일자	1985.11.01.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2/9

제7조(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상실) 학칙 및 선거규정을 위반하여 징계를 받은 자는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으며, 선거일 현재 징계 중에 있는 학생도 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.

제 2 장 선거관리위원회

- 제8조(구성) ① 선거관리위원은 본 대학 재학생으로 품행이 방정하고 신망있는 학생으로 소속 과의 추천을 받아 학생지도위원장(이하 "지도위원장"이라 한다.)이 임명한 학생으로 한다.
 - ② 선거의 실시 및 공정한 관리사무를 위해 지도위원장은 학생·지도위원 중 3인의 선거관 리지도위원을 둘 수 있다.
 - ③ 학과별 추천인원은 1명으로 한다.
 - ④ 위원회는 선거일 20일전에 대의원회 의장의 발의로 지도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구성한다.
- 제9조(선거비용) 선거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학생회비에서 지출한다.
- 제10조(선거관리위원회) ①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의원장은 위원회의 제청으로 지도위원장이 임명한다.
 - ② 선거관리위원장은 지도위원장의 지도하에 선거사무를 통괄하며,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은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.
 - ③ 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선거일정 결정 공고
 - 2.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무 일체
 - 3.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 일체
 - 4. 선거 및 입후보자에 대한 사무 일체
 - 5. 당선자의 선포 및 공고
 - 6. 기타 선거에 관한 사무 일체
- **제11조(회의)**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나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작성하여 소집 한다.
 -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성립한다. 단, 과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정한다.

제 3 장 선거인 명부

제12조(선거인 명부 작성) ① 위원회에서는 선거를 실시하기 5일전까지 선거인 명부를 작성



문서번호	BSKS-2-1-01
제정일자	1985.11.01.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3/9

해야 한다.

- ② 선거인 명부에는 선거권자의 학과 및 학년, 성명, 성별, 생년월일,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.
- ③ 선거권자는 선거인 명부를 열람하여 기재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.
- ④ 선거인 명부 양식은 지도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에서 정한다.
- 제13조(명부 작성의 감독) ① 선거인 명부의 작성에 관하여는 위원회가 이를 감독한다.
 - ② 선거관리위원장은 명부작성이 끝난 후, 이를 지도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제14조(선거시기) ① 본 규정에 의한 정·부총학생회장 선거는 매년 11월 중에 실시한다.
 - ② 선거일은 선거관리위원장이 지도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투표일 10일전에 이를 공고한다.

제 4 장 입후보 및 선거운동

- 제15조(정·부총학생회장 후보) ① 정·부총학생회장 입후보자는 본 대학 총학생회장 선거규정 제3조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.
 - ② 정·부총학생회장 입후보자는 투표일 7일전 17:00까지 다음 등록서류를 1통씩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 - 1. 입후보자 등록신청서
 - 2. 입후보자 서약서
 - 3. 입후보자 추천서
 - 4. 범죄 및 수사경력 확인서, 각서 등
 - 5. 입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직접 위원회에 서면 신고를 해야 하며 선거 관리위원장은 이 사실을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.
 - ③ 본조 2항에 의한 정·부총학생회장 후보 등록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은 지도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후보등록을 1회 연기하여 실시하며, 재등록시에도 후보자 등록이 없는 경우에는 익년 3월에 재선거를 실시한다.
- **제16조(입후보자 공고)** ① 선거관리위원장은 입후보자등록을 마친 후 등록서류를 검토하고 즉시 공고 하여야 한다.
 - ② 선거관리위원장은 후보자 등록 시 등록서류에 미비된 부분이 있으면 해당 입후보자에 게 즉시 통지하여 보완케 하며, 만일 보완통지 후 24시간이 경과하도록 서류를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권으로 한다.
- 제17조(선거운동) 선거운동은 다음 각 호에 의하며, 위반하는 자는 본 규정 제34조에 의해 징 계할 수 있다.
 - 1. 선거운동은 등록종료일 다음날부터 투표일까지로 한다.
 - 2. 대의원이나 집행위원은 선거운동원이 될 수 없다.



문서번호	BSKS-2-1-01
제정일자	1985.11.01.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4/9

- 3. 선거운동원은 각 후보당 10명 이내로 하고, 등록된 후보자의 선거운동원 외에는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.
- 4. 선거운동을 위한 벽보는 입후보 1인당 15매를 초과하지 못하며 벽보의 규격과 게시장소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.
- 5. 선거 벽보의 게시기간은 등록종료일부터 투표일까지로 한다.
- 6. 선거 벽보의 원고는 입후보자 등록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 지도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7. 입후보자는 위원회가 정하는 일시, 장소에서 합동소견발표회를 가질 수 있다. 이때 각 후보자의 발표순위는 추첨으로 정하고 소견원고는 발표 2일전까지 지도위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8.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7항의 경우 외는 녹음기, 방송시설 등의 사용을 금한다.
- 9.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의 각종 집회를 금하다.
- 10.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가정방문, 서명날인 운동, 인기투표, 행렬, 특정 입후보자비방, 기부행위, 기부 받는 행위, 음식물 제공, 금품수수, 향응, 교통질서 편의제공, 유언비어 유포, 인신공격 등을 금한다.

제 5 장 투표 및 개표

- 제18조(투표) ① 투표소는 비밀이 보장되어야 한다. 투표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.
 - ② 투표는 직접 선거하되 1인 1표로 한다.
- 제19조(투표참관) ① 투표소에는 각 입후보자가 참관인 1명을 입회시킬 수 있다.
 - ② 참관인은 투표사무에 간섭하거나 투표를 권유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이든지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다.
- 제20조(투표용지) 투표용지는 위원회에서 정한 양식으로 하되 선거일 3일전에 이를 중앙게시 판에 공고한다.
- 제21조(투표의 제한) 선거인 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학생은 투표할 수 없다.
- 제22조(투표소의 출입제한) 투표소에는 위원회가 정하는 학생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.
- 제23조 (투표의 무효) ① 다음 각 호의 투표는 무효로 한다.
 - 1. 소정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
 - 2.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인이 없는 것
 - 3. 어느 입후보자에게도 기표하지 아니한 것
 - 4. 2인 이상의 입후보자에 기표한 것
 - 5. 위원회에서 정한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또는 불확실한 표기를 한 것



문서번호	BSKS-2-1-01
제정일자	1985.11.01.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5/9

- ② 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.
- 제24조(개표) ① 개표는 참관인 입회하에 행한다.
 - ② 참관인은 개표사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, 개표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일체 금한다.
- 제25조(당선인 결정) ① 투표는 유효투표 중 최고의 득표를 얻은 자를 지도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당선인으로 하며, 최고 득표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성적우수자 및 연장자 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.
 - ② 정·부총학생회장 입후보자가 1명일 때는 유효 투표자의 과반수이상의 득표를 얻어야 하다.
 - ③ 본조 2항에 의거 당선인을 결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재투표를 실시하며, 재투표시에도 당선인을 결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.
- 제26조(당선인 통지와 공고)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은 즉시 당선인에게 당선 통지를 하고 지도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3일 이내에 당선인의 성명을 중앙게시판에 공고 하여야 한다.
- 제27조(선고 또는 당선무효) ① 본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는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지도위원 장이 선언할 수 있다.
 - ② 당선이 무효 된 경우에는 학생지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도위원장이 차점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할 수 있다.
 - ③ 선거가 무효 된 경우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도위원장이 재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.
 - ④ 재선거가 결정된 때는 당해 입후보자는 전원 무효화하고 재입후보등록 및 선거를 실시한다.

제 6 장 재선거 및 보궐선거

- 제28조(재선거) 재선거는 다음 각 호에 의거 실시한다.
 - 1. 재선거는 지도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그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실시한다.
 - 2. 지도위원장으로부터 선거일을 통고 받은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일 5일 이전에 선거일을 공고한다.
 - 3. 정·부총학생회장 입후보자는 본 대학 총학생회 선거규정 제3조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, 투표일 3일전 17:00까지 본 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등록서류를 1통씩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 - 4. 선거관리위원장은 입후보 등록을 마친 후 즉시 입후보자를 공고해야 한다.
 - 5. 선거운동은 등록종료일 다음날부터 할 수 있으며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

문서번호	BSKS-2-1-01
제정일자	1985.11.01.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6/9

- 6. 기타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장의 제청에 따라 지도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제29조(보궐선거) 보궐선거는 결원이 생긴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선한다. 다만, 임기 만료 일이 3개월 미만일 때는 보선하지 않는다.

제 7 장 선거에 관한 이의제기

- 제30조(이의제기) ①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, 참관인, 입후보자는 선거일로 부터 5일 내에 위원회에 이의제기 신청을 할 수 있다.
 - ② 이의가 제기된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,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 2일 내에 이 내용을 작성 즉시 산학처를 경유, 학생지도위원회에 통지 한다.<개정 2020.09.25.>
- 제31조(이의제기 판결) 이의 제기된 내용이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을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지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선거 또는 당선무효를 선언할 수 있다.
- 제32조(이의제기 처리) 선거에 관한 이의제기는 신속히 처리하며, 이의가 제기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한다.
- 제33조(이의제기 통지) 이의 제기된 내용이 처리된 때는 지도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장에게 통보하고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를 즉시 게시판에 공고한다.

제 8 장 징 계

- 제34조(장계) 본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학칙과 본 규정에 의거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도위원장이 징계할 수 있다.
- 제35조(징계의 종류 및 내용)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당선무효, 선거무효, 근신, 유기 정학, 무기정학, 퇴학(제적)으로 징계한다.
 - 1. 제17조 (선거운동) 각항을 위반한 자
 - 2. 정당한 이유없이 선거에 관한 벽보를 철거, 오손하는 행위를 한 자
 - 3. 투표 및 기표에 간섭하거나 기표를 강요한 행위를 한 자
 - 4. 선거사무 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 또는 소란 행위를 한 자
 - 5. 선거를 위해할 목적으로 다수인을 선동하는 행위를 한 자
 - 6. 선거인 명부에 허위 등재 또는 위조 날인한 행위를 한 자
 - 7. 허위로 투표하는 행위를 한 자



문서번호	BSKS-2-1-01
제정일자	1985.11.01.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7/9

- 8. 입후보 등록 전 사전 선거운동을 한 자
- 9.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폭력, 외부 세력 동원 등 부정한 행위를 한 자
- 10. 향응을 제공한 자와 제공받은 자
- 11. 선거로 인해 학교 및 교직원의 명예를 심히 추락시키는 행위
- 12. 선거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자
- 13. 위원회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자
- 14. 기타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거나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자

제36조(관계서류 보관) 선거관계의 모든 서류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촉받아 학생산학취업 처에서 2년간 보관한다.<개정 2020.09.25.>

제37조(개정) 본 규정의 개정은 학생지도위원회의 결의로서 행한다.

제 9 장 보 칙

제38조(규정보완) 본 규정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학생지도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의의 결과 관례에 따른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198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1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

문서번호	BSKS-2-1-01
제정일자	1985.11.01.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8/9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4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본교 행정조직 개편(2014.02.01.)에 의하여 본 규정 관련 업무를 『산학처』에서 『교학처』로 이관하고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본교 행정조직 개편(2020.07.03.)에 의하여 본 규정 관련 업무를 『교학처』에서 『산학취업처』로 이관하고 2020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(2020.09.25.)에 의하여 『산학취업처』를 『학생산학취업처』로 명칭 변경하고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

문서번호	BSKS-2-1-01
제정일자	1985.11.01.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9/9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(2022.04.15.)에 의하여 『학생산학취업처』를 『산학처』로 ,『기획처』를 『기획실』로,『입학홍보처』를 『입시홍보실』 명칭 변경하고 202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.